|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2021년 3월 31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수정한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서 일컫는 외국보험회사는 중국 경외에 등록되어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 외자보험회사는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최소 1개 보험회사 혹은 보험그룹회사가 주요 주주여야 하고, 지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최소 1개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회사가 주주여야 한다.  외자보험회사의 외국투자자 중 유일한 주주 또는 주요 주주는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그룹회사여야 한다.  주요 주주는 지분보유율이 가장 높은 주주 및 법률, 행정법규,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회사경영관리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주를 가리킨다.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공동행위자(persons acting in concert)의 지분보유율은 합쳐서 계산한다.  **제4조** 외자보험회사의 주요 주주는 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한 지분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외자보험회사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  은보감회 비준을 거쳐 위험처분(risk treatment)을 진행하는 경우, 은보감회가 법에 따라 양도를 명령하는 경우, 사법 강제집행과 관련되거나 혹은 동일지배인이 통제하는 다른 주체 간의 지분양도 등과 같은 특수상황은 제외한다.  **제5조** 외자보험회사의 주요 주주가 지분을 줄이거나 중국시장에서 철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주 의무를 다하고, 보험회사의 변제능력이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6조** 외자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은 실제 납입한 현금이어야 한다.  **제7조** 외국보험회사의 분공사 설립 후, 외국보험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8조**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일컫는 설립 신청 전 1년 연말은 신청일의 직전 1개 회계연도말을 의미한다.  **제9조** <조례> 제8조 제5항에서 일컫는 기타 신중한 조건은 최소한 다음의 조건을 포함한다.  9.1 합리적인 법인 관리구조  9.2 견실한 위험관리체제  9.3 완전한 내부통제제도  9.4 유효한 관리정보시스템  9.5 경영상황 양호, 중대한 위법위규 기록 없음  **제10조** 신청인이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요구한 영업집조(부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영업집조 사본 또는 유관 주관당국이 발급한 해당 신청인이 보험업무 경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서면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일컫는 외국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유관 주관당국이 발급한 변제능력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관한 증명은 아래 내용 중 하나를 포함하여야 한다.  11.1 유관 주관당국이 증명을 발급한 날의 직전 1개 회계연도에 해당 신청인의 변제능력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  11.2 유관 주관당국이 증명을 발급한 날의 직전 1개 회계연도 중- 해당 신청인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변제능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록이 없음.  **제12조**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일컫는 외국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유관 주관당국의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1 해당 신청인이 중국 경내에 보험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12.2 해당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  12.3 유관 주관당국이 의견을 발급한 날 기준으로 직전 3년간 해당 신청인이 처벌을 받은 기록  **제13조** <조례> 제9조 제3항에서 일컫는 연도보고에는 신청인의 신청일 기준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항에서 열거한 보고서에는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서 허가한 회계사사무소 또는 감사인사무소에서 발급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하였거나 국무원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 제9조 제4항에서 일컫는 중국 신청인은 <보험회사 지분 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설립 예정인 외자보험회사의 설립준비책임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5.1 전문대 이상 학력  15.2 보험 또는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  15.3 위법 범죄기록이 없음  **제16조** 신청인이 <조례>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준비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설립준비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내에 은보감회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일컫는 설립준비보고는 해당 조항 기타 각종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제18조** <조례> 제11조 제4항에서 일컫는 법정 자본금 출자 검증기구는 은보감회 요구에 부합하는 회계사사무소를 의미한다.  **제19조** <조례> 제11조 제4항에서 일컫는 자본금 출자증명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9.1 법정 자본금 출자 검증기구가 발급한 자본금 출자보고서  19.2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은행 원시 입금 증빙 사본  **제20조** <조례> 제11조 제5항에서 일컫는 주요 책임자는 설립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총경리를 의미한다.  임명 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권서는 외국보험회사 동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임명 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총경리에 대한 수권서를 의미한다.  수권서에는 피수권인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조례> 제11조 제6항에서 일컫는 설립예정 회사의 고급관리인원은 은보감회에서 규정한 임직자격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고급관리인원은 보험회사 본사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2조** <조례> 제11조 제9항에서 일컫는 설립예정 회사의 영업장소 자료는 영업장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증명 문건을 의미한다.  <조례> 제11조 제9항에서 일컫는 업무와 관련된 기타시설 자료는 최소한 컴퓨터 설비 배치, 네트워크 구축 상황 및 정보관리시스템 상황을 포함한다.  **제23조** 외자보험회사는 업무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분지기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보험회사 분공사는 그 소재지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행정관할 지역내에서만 업무를 전개할 수 있고, 은보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합자보험회사, 독자보험회사가 그 소재지 이외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업무를 전개할 경우, 분지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분지기구의 설립과 관리는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외자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의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임직자격 심사와 관리는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본 세칙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 합자, 독자재산보험회사가 분리, 합병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으로 해산을 신청할 경우, 은보감회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5.1 회사 동사장이 서명한 신청서  25.2 회사 주주회의 결의  25.3 설치 예정 청산팀 인원 구성 및 청산방안  25.4 책임이 종료되지 않은 처리방안  **제26조** 은보감회의 해산 비준을 받은 합자, 독자재산보험회사는 은보감회 비준문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새로운 업무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은보감회에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반환한 후 15일 내에 청산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청산팀은 설치일로부터 5일 내에 회사 청산절차 개시 상황을 시장감독관리국, 세무,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유관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청산팀은 설치일로부터 1개월 내 은보감회 요구에 부합하는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초빙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은보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청산팀은 매월 10일 전에 은보감회에 채무상환, 자산처분 등에 관한 최신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조례> 제28조에서 일컫는 신문이란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전국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의미한다.  **제31조** 외국재산보험회사가 중국 경내 분공사 폐쇄를 신청할 경우, 은보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 외국재산보험회사 동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신청서  31.2 설치 예정 청산팀 인원 구성 및 청산방안  31.3 책임이 종료되지 않은 처리방안    외국재산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의 분공사를 폐쇄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 및 본 세칙의 합자, 외자재산보험회사 관련 해산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외국재산보험회사 분공사의 본사가 해산 및 법에 의거 폐쇄당하거나 파산을 선고받는 경우, 외국재산보험회사 분공사의 청산 및 채무처리는 <조례> 제30조 및 본 세칙의 합자, 독자재산보험회사 해산과 관련된 상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조례> 제40조에서 일컫는 외국재산보험그룹회사란 소재 국가에서 법에 따라 등록하여 그룹 내 1개 또는 다수 보험회사를 지배, 공동 지배 및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보험그룹이란 보험그룹회사 및 그 지배, 공동 지배 및 중대한 영향을 받는 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보험업무가 기업집단의 주요 업무이다.  **제33조**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한 외국보험그룹회사는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3.1 <조례> 제8조 제1, 4, 5항 규정에 부합  33.2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 완벽한 보험감독관리제도가 갖춰져 있고, 해당 외국보험그룹회사 또는 그 주요 보험 자회사가 이미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유관 주관당국의 유효한 감독관리를 받고 있음  33.3 소속된 외국보험그룹 또는 그 주요 보험 자회사가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변제능력 기준에 부합  전항에서 일컫는 주요 보험 자회사란 보험그룹회사의 지배, 공동지배를 받고 있고, 설립 신청 전년도 총자산 규모 순위가 상위인 1개 또는 다수의 보험회사를 의미하며, 동시에 해당 1개 또는 다수의 보험회사 총자산합계가 해당 보험그룹 연결재무제표 보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제34조**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한 외국보험그룹회사는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4.1 해당 외국보험그룹회사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유관 주관당국이 심사 발급한 영업집조(부본)  34.2 해당 외국보험그룹회사 또는 그 주요 보험 자회사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유관 주관당국이 발급한 변제능력 기준에 부합한다는 증명 및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  34.3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제2항을 제외한 자료  전관 제34.1, 34.2항에서 요구한 자료는 본 세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5조** 외자보험회사가 주주를 변경하고, 양수예정자 또는 승계예정자가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그룹회사인 경우, <조례> 및 본 세칙의 외자보험회사 설립신청에 관한 주주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6조** <조례> 제41조에서 일컫는 경외 금융기구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등록하고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관리 당국의 비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구를 의미한다.  **제37조** 보험회사, 보험그룹회사 이외의 경외 금융기구가 외자보험회사의 주주일 경우, <보험회사 지분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외자보험회사가 본 세칙의 유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은보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9조** <조례> 및 본 세칙에서 제출 및 발송을 요구하는 문건, 자료와 서면보고는 중문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중문과 외국어가 불일치할 경우, 중문본의 설명을 기준으로 한다.  **제40조** <조례> 및 본 세칙에서 규정한 기한은 유관 자료를 은보감회에 송달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의 신청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한은 신청인이 추가 자료를 은보감회에 송달한 날로부터 재계산한다.  본 세칙에서 비준 및 보고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업무일을 의미한다.  **제41조** 외자보험회사 관리에 대해 <조례>와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법률, 행정법규와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외자재보험회사의 설립은 <재보험회사 설립규정>을 적용하고, <재보험회사 설립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42조**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외상투자 안전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보험회사 및 보험집단회사가 중국 경내(대륙)에 설립 및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조례>와 본 세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 또는 행정협의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 외국보험회사와 외국보험그룹회사가 중국 경내 보험회사의 주주 자격으로 보험그룹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보험그룹회사 관리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되는 않은 사항은 <조례>와 본 세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45조** 본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기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2004년 5월 13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보감회령 2004년 제4호)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  **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实施细则**    （根据2021年3月10日《中国银保监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实施细则>的决定》修正）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和《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以下简称《条例》），制定本细则。  **第二条** 《条例》所称外国保险公司，是指在中国境外注册、经营保险业务的保险公司。  **第三条** 外资保险公司至少有1家经营正常的保险公司或者保险集团公司作为主要股东，进行股权变更的，变更后至少有一家经营正常的保险公司或者保险集团公司作为主要股东。  外资保险公司的外方唯一或者外方主要股东应当为外国保险公司或者外国保险集团公司。  主要股东是指持股比例最大的股东，以及法律、行政法规、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银保监会）规定的其他对公司经营管理有重大影响的股东。股东与其关联方、一致行动人的持股比例合并计算。    **第四条** 外资保险公司主要股东应当承诺自取得股权之日起5年内不转让所持有的股权，并在外资保险公司章程中载明。  经银保监会批准进行风险处置的，银保监会责令依法转让的，涉及司法强制执行的，或者在同一控制人控制的不同主体之间转让股权等特殊情形除外。  **第五条** 外资保险公司主要股东拟减持股权或者退出中国市场的，应当履行股东义务，保证保险公司偿付能力符合监管要求。  **第六条**　外资保险公司的注册资本或者营运资金应当为实缴货币。  **第七条**　外国保险公司分公司成立后，外国保险公司不得以任何形式抽回营运资金。  **第八条** 《条例》第八条第一项所称设立申请前1年年末，是指申请日的上一个会计年度末。  **第九条** 《条例》第八条第五项所称其他审慎性条件，至少包括下列条件：   1. 法人治理结构合理； 2. 风险管理体系稳健； 3. 内部控制制度健全；   （四）管理信息系统有效；  （五）经营状况良好，无重大违法违规记录。  **第十条** 申请人不能提供《条例》第九条第二项要求的营业执照（副本）的，可以提供营业执照的有效复印件或者有关主管当局出具的该申请人有权经营保险业务的书面证明。  **第十一条** 《条例》第九条第二项所称外国申请人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对其符合偿付能力标准的证明，应当包括下列内容之一：  （一）在有关主管当局出具证明之日的上一个会计年度，该申请人的偿付能力符合该国家或者地区的监管要求；  （二）在有关主管当局出具证明之日的上一个会计年度中，该申请人没有不符合该国家或者地区偿付能力标准的记录。  **第十二条**　《条例》第九条第二项所称外国申请人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对其申请的意见书，应当包括下列内容：  （一）该申请人申请在中国境内设立保险机构是否符合该国家或者地区的法律规定;  （二）是否同意该申请人的申请;  （三）在有关主管当局出具意见之日的前3年，该申请人受处罚的记录。  **第十三条**　《条例》第九条第三项所称年报，应当包括申请人在申请日的前3个会计年度的资产负债表、利润表和现金流量表。  前款所列报表应当附由申请人所在国家或者地区认可的会计师事务所或者审计师事务所出具的审计意见书。  **第十四条**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或者经国务院批准外，《条例》第九条第四项所称中国申请人应当符合《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等相关规定要求。  **第十五条**拟设外资保险公司的筹建负责人应当具备下列条件：  （一）大专以上学历；  （二）从事保险或者相关工作2年以上；  （三）无违法犯罪记录。  **第十六条**　申请人根据《条例》第十一条规定申请延长筹建期的，应当在筹建期期满之日的前1个月以内向银保监会提交书面申请，并说明理由。  **第十七条** 《条例》第十一条第一项所称筹建报告，应当对该条其他各项的内容作出综述。  **第十八条** 《条例》第十一条第四项所称法定验资机构，是指符合银保监会要求的会计师事务所。  **第十九条** 《条例》第十一条第四项所称验资证明，应当包括下列内容：  （一）法定验资机构出具的验资报告；  （二）注册资本或者营运资金的银行原始入账凭证的复印件。  **第二十条** 《条例》第十一条第五项所称主要负责人，是指拟设外国保险公司分公司的总经理。  对拟任外国保险公司分公司主要负责人的授权书，是指由外国保险公司董事长或者总经理签署的、对拟任外国保险公司分公司总经理的授权书。  授权书应当明确记载被授权人的权限范围。  **第二十一条**　《条例》第十一条第六项所称拟设公司的高级管理人员，应当符合银保监会规定的任职资格条件。  外国保险公司分公司的高级管理人员，应当具备保险公司总公司高级管理人员的任职资格条件。  **第二十二条**　《条例》第十一条第九项所称拟设公司的营业场所的资料，是指营业场所所有权或者使用权的证明文件。  《条例》第十一条第九项所称与业务有关的其他设施的资料，至少包括计算机设备配置、网络建设情况以及信息管理系统情况。  **第二十三条** 外资保险公司可以根据业务发展需要申请设立分支机构。  外国保险公司分公司只能在其所在省、自治区或者直辖市的行政辖区内开展业务，银保监会另有规定的除外。  合资保险公司、独资保险公司在其住所地以外的各省、自治区、直辖市开展业务的，应当设立分支机构。分支机构的设立和管理适用银保监会的有关规定。  **第二十四条**　外资保险公司及其分支机构的高级管理人员，其任职资格审核与管理，按照银保监会的有关规定执行，本细则另有规定的除外。  **第二十五条**　合资、独资财产保险公司因分立、合并或者公司章程规定的解散事由出现，申请解散的，应当报银保监会批准，并提交下列资料：  （一）公司董事长签署的申请书；  （二）公司股东会的决议；  （三）拟成立的清算组人员构成及清算方案；  （四）未了责任的处理方案。  **第二十六条**　经银保监会批准解散的合资、独资财产保险公司，应当自收到银保监会批准文件之日起，停止新的业务经营活动，向银保监会缴回经营保险业务许可证，并在15日内成立清算组。  **第二十七条**　清算组应当自成立后5日内将公司开始清算程序的情况书面通知市场监督管理、税务、人力资源社会保障等有关部门。  **第二十八条**　清算组应当自成立之日起1个月内聘请符合银保监会要求的会计师事务所进行审计；自聘请之日起3个月内向银保监会提交审计报告。  **第二十九条**　清算组应当在每月10号前向银保监会报送有关债务清偿、资产处置等最新情况报告。  **第三十条**　《条例》第二十八条所称报纸，是指具有一定影响的全国性报纸。  **第三十一条**　外国财产保险公司申请撤销其在中国境内分公司的，应当报银保监会批准，并提交下列资料：  （一）外国财产保险公司董事长或者总经理签署的申请书；  （二）拟成立的清算组人员构成及清算方案；  （三）未了责任的处理方案。  外国财产保险公司撤销其在中国境内分公司的具体程序，适用《条例》及本细则有关合资、外资财产保险公司申请解散的程序。  外国财产保险公司分公司的总公司解散、依法被撤销或者宣告破产的，外国财产保险公司分公司的清算及债务处理适用《条例》第三十条及本细则有关合资、独资财产保险公司解散的相应规定。  **第三十二条**　《条例》第四十条所称外国保险集团公司，是指经所在国家依法登记注册，对集团内一家或者多家保险公司实施控制、共同控制和重大影响的公司。  保险集团是指保险集团公司及受其控制、共同控制和重大影响的公司组成的企业集合，且保险业务为企业集合的主要业务。  **第三十三条**　申请设立外资保险公司的外国保险集团公司,应当具备下列条件：  （一）符合《条例》第八条第一、四、五项的规定；  （二）所在国家或者地区有完善的保险监管制度，并且该外国保险集团公司或者其主要保险子公司已经受到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的有效监管；  （三）其所属外国保险集团或者其主要保险子公司符合所在国家或者地区偿付能力标准。  前款所称主要保险子公司是指受保险集团公司控制、共同控制，申请设立前一年度总资产规模排名靠前的一家或者多家保险公司，且该一家或者多家保险公司合计总资产占该保险集团合并报表保险总资产比重不低于60%。  **第三十四条** 申请设立外资保险公司的外国保险集团公司,应当提交下列资料：  （一）该外国保险集团公司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核发的营业执照（副本）；  （二）该外国保险集团公司或者其主要保险子公司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出具的符合偿付能力标准的证明及对其申请的意见书；  （三）《条例》第九条规定的除第二项之外的资料。  前款第一、二项所要求的资料，应当符合本细则第十条至第十二条的规定。  **第三十五条** 外资保险公司变更股东，拟受让方或者承继方为外国保险公司或者外国保险集团公司的，应当符合《条例》及本细则关于申请设立外资保险公司的股东条件。  **第三十六条**　《条例》第四十一条所称境外金融机构，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注册并经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批准或者许可的金融机构。  **第三十七条** 保险公司、保险集团公司以外的境外金融机构成为外资保险公司股东的，适用《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相关规定。  **第三十八条**　外资保险公司违反本细则有关规定的，由银保监会依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条例》等法律、行政法规进行处罚。  **第三十九条**　《条例》及本细则要求提交、报送的文件、资料和书面报告，应当提供中文本，中外文本表述不一致的，以中文本的表述为准。  **第四十条**　《条例》及本细则规定的期限,从有关资料送达银保监会之日起计算。申请人申请文件不全、需要补交资料的，期限应当从申请人的补交资料送达银保监会之日起重新计算。  本细则有关批准、报告期间的规定是指工作日。  **第四十一条**对外资保险公司的管理，《条例》和本细则未作规定的，适用其他法律、行政法规与银保监会的有关规定。  外资再保险公司的设立适用《再保险公司设立规定》，《再保险公司设立规定》未作规定的，适用本细则。  **第四十二条** 投资外资保险公司，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应当依法进行外商投资安全审查。  **第四十三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保险公司和保险集团公司在内地(大陆)设立和营业的保险公司，参照适用《条例》和本细则；法律、行政法规或者行政协议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第四十四条**　外国保险公司和外国保险集团公司作为中国境内保险公司股东，设立保险集团公司的，适用保险集团公司管理的相关规定，未作规定的，参照适用《条例》和本细则。  **第四十五条**　本细则自公布之日起施行。原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04年5月13日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实施细则》（保监会令2004年第4号）同时废止。 |